

경제 활력대책 회의
19-2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II]

2019. 1. 9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희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 세계 시장규모 : ('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II. 주요 추진과제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용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희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25 → 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 / 발행한도: 7→15억원
 -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순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전략	4
III. 주요 추진과제	5
IV. 향후 추진계획	15

I. 추진배경

1 공유경제의 등장 및 확산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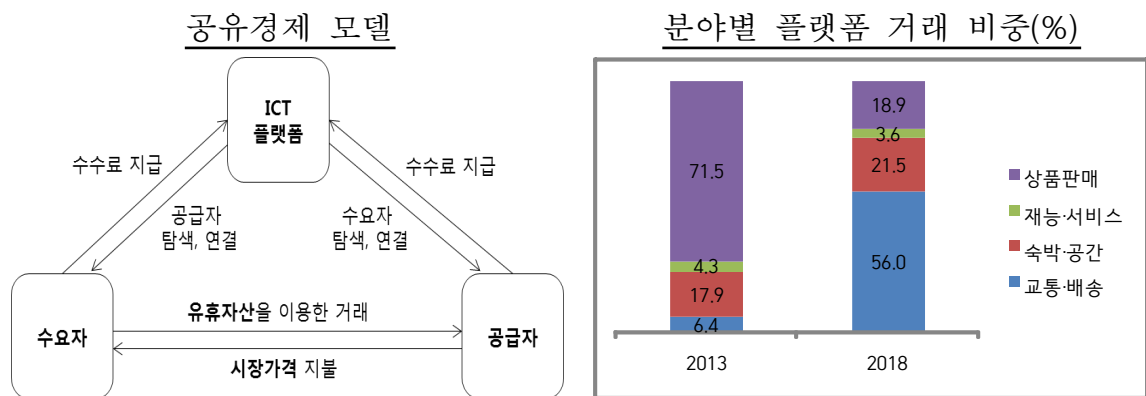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희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

-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P2P 공유경제 모델 확산

* (숙박)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은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매칭
(교통)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플랫폼은 교통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매칭

- 기존 상품거래 외에 교통, 숙박·공간, 재능 등 공유경제 거래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주요 거래 분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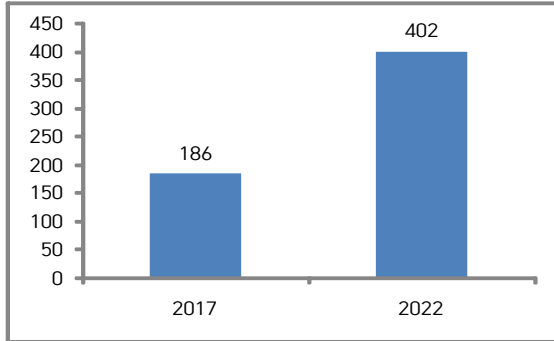
* 자료: JP Morga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지속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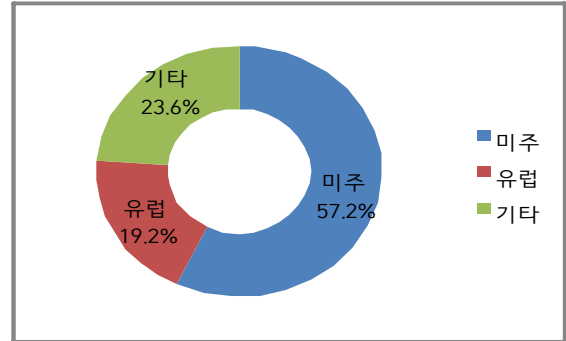
- 세계 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17년 186억불에서 '22년 402억불로 확대 전망

- 세계 대비 국내시장은 작으나, 20~30대의 높은 참여도(55%),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64.7%)로 수요확대 전망 (산업연, '16)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전망(억불)



'22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점유율 전망



* 자료 : Juniper Research(2017)

2 공유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

- 공유경제는 단순 소비변화를 넘어 혁신성장을 이끌 신서비스 사업 모델로 활성화할 필요
- ① 기존 거래되지 않던 유희 자원 거래 → 신서비스 시장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

* '16년 중국은 공유경제 관련 직접 일자리 85만개, 간접 일자리 1천만개 창출

-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중

중국 공유경제 일자리 창출 실적(명)

	'15년	'16년
서비스 이용자	5억	6억(+1억)
서비스 제공자	5천만	6천만(+1천만)
공유경제 기업 취업자	500만	585만(+85만)

상위10개 유니콘기업중 공유경제기업

순위	기업	분야	기업가치
1	우버	교통	720억달러
2	디디추싱	교통	560억달러
3	에어비앤비	숙박	293억달러
6	위워크	공간	200억달러

* 출처: 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서(중국정부, '17) * 출처: CB Insights('18)

②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서비스 제공 → 소비자(국민) 만족도 제고* 및 후생 증진

*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는 향후 지속적 참여를 희망 (산업연, '16)

③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득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

* 사람들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해 월소득이 평소보다 적거나 이직 과정중에 있을 때에 플랫폼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소득에 의존 (JP Morgan, '16)

⇒ 공유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

③ 공유경제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

- 해외에서 활성화된 공유경제 서비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진입 규제 등으로 인해 도입·활성화에 제한
 - 공유경제 공급자는 유희자산의 일시적 공급자라는 특성상 기존 사업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 존재
- 공유경제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띠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요인 존재
 - 공유경제 참여자는 일시적 공급자의 특성상 전통적 사업자에 비해 세금신고·납부에 대한 전문성이 낮음
 - 근로관계·노동시간이 유동적이며 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노동자 보호문제 부각
 -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지속

* 공유경제 미참여자의 53.5%는 미참여 이유로 신뢰성저하 지적 (산업연, '16)

⇒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II. 추진전략

◇ 공유경제 활성화가 신서비스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

- ① 교통, 숙박, 공간, 금융·지식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 ② 과세, 참여자 보호, 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시장 창출

목표

-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
-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

추진 전략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과제

- 숙박 분야
- 교통 분야
- 공간 분야
-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 과세체계 정비
- 공급자·소비자 보호
-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

Ⅲ. 주요 추진과제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1. 숙박 분야

◇ 숙박공유는 세계적 확산중이나 국내에선 제한적 허용

-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
- 국내는 농어촌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①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해외사례】 미국 샌프란시스코·뉴욕 등 주인 거주시 일수제한 없이 숙박공유 허용, 일본 연 180일, 파리 연 120일, 런던 연 90일 숙박공유 허용 등

- 전문숙박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年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

* 허용 주택의 종류(예: 단독주택 등)는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

-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

-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 유사업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기준을 고려하여 소방·숙박위생 등 의무부과

2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

- (기존 숙박업계 발전 지원)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 마련
 -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용자* 등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등
 - *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용자지원 허용 (4-5년 거치, 4-7년 분할상환, '19년 관광기금 전체 용자규모: 4,920억원)
 -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여행 포털 '월촌'에 등재·소개 등
 -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한도로 비과세
 -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500만원→1,000만원)
 - *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2.6%)을 여타업종(1.3%)보다 높게 '21년까지 적용 연장
- (공정한 경쟁질서)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18.9월) 등 기존 숙박업계와의 대화·토론과정에서 숙박업계의 주요 요구사항 반영
 -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 및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
 -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 *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 제한의무 준수여부 등 점검에 활용
- (상생협의체 가동)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채널 운영
 - 숙박업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집·개선 지속 추진
 - * 기존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부처 등 참여('18.11-12월 2차례 개최)

2. 교통 분야

◇ 020플랫폼과 교통수단을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지속 등장

-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
-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제도가 미비하여 공급자·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

① 카셰어링 활성화

- 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자율화
 - (기존) 차량대여업은 주사무소·영업소에서만 허용 →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만 가능
 - (개선)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외 장소에서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스마트도시법 개정)
- ②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他지역의 일시상주기간 확대(1→3개월)
 - (기존) 기존 영업소(예: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타 지역 영업소(예: 부산)에서 영업 및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개선) 타지역 일시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③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 (기존) 카셰어링 이용시 과태료·범칙금 등 고지서는 차량의 등록지인 무인영업소로 발송 → 분실 등으로 회수 어려움
 - (개선)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개정.)
- ④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존) 카셰어링 업체 등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법인세·소득세 30%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개선)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특법 개정)

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 현재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시 개별소비세 부과
- (기존) 대여기간 산정시 짧은시간(예: 1시간)을 대여해도 1일 대여로 계산
- (개선)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대여기간을 日단위가 아닌 時間단위로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②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020 서비스 활성화

①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시에 한정)

- (기존) 전세버스는 1개 운송계약 체결만 가능 → 비정기적 운행이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전세버스 탑승객을 모집하고 경비를 각출하는 행위 금지

【사례】 플랫폼 사업자가 스포츠 관람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여 전세 버스를 대절 및 탑승자에게 경비 각출(플랫폼 사업자는 미탑승) → 위법

- (개선)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하여 허용(여객법 유권해석)

②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기존) 복수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면허발급 주체 불명확
- (개선)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조정하여 신속한 면허발급을 지원

③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개 노선 → '20년까지 17개 노선)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

③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①국민편의 제고, ②교통산업의 발전, ③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3. 공간 분야

◇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 활성화,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 움직임도 활발

① [주차장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서울시)
 - * 예)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
- 주차장 공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센서 설치 등 IoT 기술* 시범도입(~'22년)
 - * 주차장에 주차 여부 등을 판별 →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

② [주거 공유]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법무부)
 - *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 착수('18.12월) →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19.6월)

【예시】 세어하우스 입주자간 생활규칙 미지정 또는 생활규칙에 따른 입주자 강제 퇴거명령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비

③ [공공자원 공유]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① 국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19년)
 - * '18.8월부터 442개 기관 대상,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체육시설 등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②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전환('19년~)
 -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19년 중진공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 73개 기관 대상 시범실시

③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지원*

* ('18) 공모를 통해 일부 지자체만 시범적으로 지원 → ('19) 전국 확산

④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 도입, 참여 학교에게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 확대(서울시)

* 민간 공유기업이 협력학교의 생활체육시설 실시간 예약을 지원하고, 시설·인원 및 안전 등을 전담하여 관리 ('18년 4개교 → '19년 목표 10개교)

⑤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18.3월 기준 420개) 활용도 제고

【주요 폐교 활용계획 예시】

- (전남 법성포초 진량분교) 전남안전체험 교육센터로 전환 ('19.1월)
- (경남 마리중) 거창 나래학교(특수학교)로 전환 ('19.3월)

4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익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 허용 ('19.6월 시행)

	현행	개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천재지변,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사업에 사용 등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시에도 허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4.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 자금공유,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공유 확산

1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 합리화

- (기존) P2P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율 적용(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은 14%)
- (개선)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P2P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한 14% 적용**

*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예정 **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②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

- P2P 업체관련 정보,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강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전가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 *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18.12월)
 -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③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기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내 기업만 발행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연간 최대 7억원 모집가능,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금지
 - (개선) 일반 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 (15억원),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④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

-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
 - * 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제공하고 토론, 퀴즈 등 양방향 학습 지원
 - ** (현행) 대학, 기업, 출연연 등 허용 → (개선)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 추가 검토
 -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이수증 발급) 도입 (~'21년)**
-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하고, K-MOOC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 확대**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19년 시행)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과세체계 정비

①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②납세편의 제고 등 납세협력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 * 현재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부담

②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 제시

【해외사례】 미국·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 관련 별도 세션을 두고 세법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

2. 공급자·소비자 보호

①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를 포함*
 - *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 (확대) 방문서비스 종사자, A/S 기사(~'20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21년)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
 - * 현재는 종사자가 임의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②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

-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
 - * ①플랫폼업체가 업무를 배분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수 제공, ②여러 플랫폼 업체에 중복 종사, ③단시간·유동적 노동 등으로 평균보수 산출 곤란
 - (기존)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서 고용주가 납부
 - (개선)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징수
- (추진일정)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 요율 체계 마련

③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 카쉐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추진
 - (기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개선) 관계법상 인·허가, 사업자등록 완료시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
-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환불·손해배상,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등은 존치

3.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①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20-30%)
- 데이터·보안 등 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 25%, 중견 8%, 대기업 최대 2%)

구분	현행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11개 분야 157개 기술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 발굴·추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품질·생산·설비·물류관리 관련 자체교육비·위탁훈련비	데이터·보안 등 ICT 관련분야 추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2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 공개('19년)
 - * '22년까지 128종 **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
-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유통*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 빅데이터 전문센터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
-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 * ('17) 법률, 특허 등 4종 → ('18) 관광·문화, 농업, 헬스케어, 음성 등 7종 → ('19) 사물·시설 이미지, 도로·안전·동작 영상, 등 총 10여종 구축예정

3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를 실시
 - * 분야별 인력·매출·수익모델 등 시장현황, O2O 서비스 이용계층·인지도 등
- 이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 마련('19년)

IV.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1-1. 숙박 분야			
1-1-1.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문체부	'19.1/4~
1-1-2.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농림부	'19.1/4~
1-1-3.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	복지부	'19.1/4~
1-2. 교통 분야			
1-1-1.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국토부	'19.3/4
1-1-2.	카셰어링 차량의 타지역 일시상주기간 확대	국토부	'19.2/4
1-1-3.	카셰어링 차량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국토부	'19.2/4
1-1-4.	카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19.1/4
1-1-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국토부	'19.1/4
1-1-6.	한정면허 제도 수요자 친화적 개선	국토부	'19.3/4
1-1-7.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국토부	'19.2/4
1-3. 공간 분야			
1-3-1.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서울시	'19.1/4~
1-3-2.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법무부	'19.2/4
1-3-3.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구축	행안부	'19.4/4
1-3-4.	공공부문 해외사무소 공간 예약플랫폼 구축	중기부	'19.1/4~
1-3-5.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행안부	'19.2/4~
1-3-6.	지자체의 공유공간 조성 지원	행안부	'19.1/4~
1-3-7.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공유모델 확산	서울시	'19.4/4
1-4.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1-4-1.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기재부	'20.1/4~
1-4-2.	P2P 대출 산업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	'19.4/4
1-4-3.	클라우드펀딩 규제개선	금융위	'19.2/4
1-4-4.	K-MOOC를 통한 재능공유 촉진	교육부	'19.1/4~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2-1. 과세체계 정비			
2-1-1.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기재부	'19.1/4
2-2-2.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국세청	'19.2/4
2-2. 종사자·소비자 보호			
2-2-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고용부	'19.1/4~
2-2-2.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정비	고용부	'19.4/4
2-2-3.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공정위	'19.2/4
2-3. 공유기업 혁신지원			
2-3-1.	플랫폼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19.1/4
2-3-2.	기업이 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	행안부, 과기정통부	'19.1/4~
2-3-3.	플랫폼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19.4/4